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제875호 2023. 12. 6.(수)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의령군 고시 제2023-177호 2023년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2
- 의령군 고시 제2023-179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4
- 의령군 고시 제2023-180호 도로명주소 고시 6

공 고

- 의령군 공고 제2023-1395호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의령군 공고 제2023-1408호
2024년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6
- 의령군 공고 제2023-1416호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 의령군 공고 제2023-1417호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9

의령군 고시 제2023-177호

2023년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의 령 군 수

1. 고 시 명 : 2023년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2. 대 상 지 :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산111 등 3개소 (해제)
 3. 해제사유
 - 가.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2개소)
 -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 동안 재해 발생이 없는 지역(1개소)
 4. 고시일자 : 2023. 11. 30.
 5. 열람 및 문의사항
 -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도면은 의령군 산림휴양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휴양과 공원녹지팀(055-570-37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지 내역 1부. 끝.

2023년 의령군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내역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 종류	소유자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비고
제2023-07호	경남	의령	봉수	서암	산111	13,091	494	산사태	산지방	-	동래* 씨**공 파34대 손평중 소중중	해제
소계						13,091	494					
제2023-08호	경남	의령	유곡	칠곡	산89	33,036	300	토석류	계류 보전	송*리 7*6	박*창	해제
소계						33,036	300					
제2023-09호	경남	의령	화정	상정	산171-1	32,727	300	산사태	-	-	창녕* 씨소중 중**파 문중	해제
소계						32,727	300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의령군수

1. 고시일: 2023. 12. 6.
2. 고시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1차 종속구간 끝지점연장(진의로4길)에 관한 사항(붙임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055-570-2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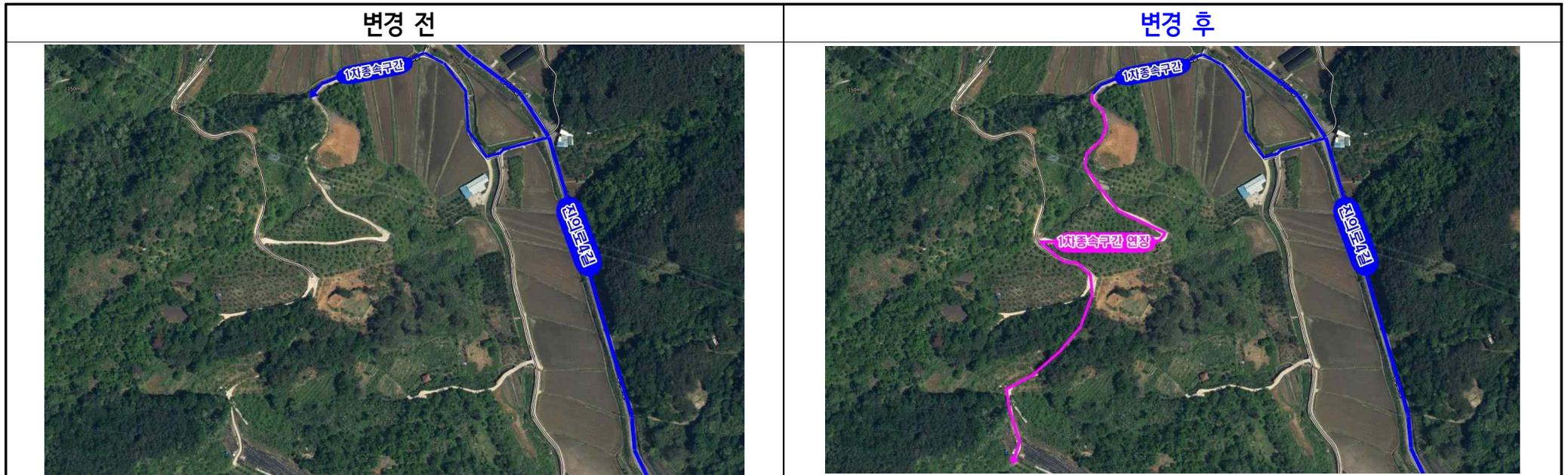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도면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순번	구분	도로명	도로명 부여 사유	변경사유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유사 도로명 및 동일 도로명	변경 고시일
						시점	종점	중심선				시작	끝		
1	변경 전	진의로4길 (1차종속구간)	진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차종속 도로구간 끝 지점 연장에 따른 도로 구간 변경	화정면 가수리	가수리 646	가수리 산69	도면 참조	302	3	20	97-1	97-32	-	2023.12.6
	변경 후	진의로4길 (1차종속구간)				가수리 646	가수리 857		891.4	3	20	97-1	97-92		

○ 도로구간 변경 전·후 도면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 - 18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의령군수

- 도로명주소 부여: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진의로3길 34-7 등 6
- 도로명주소 변경: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5길 5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055-570-2440)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가수리 198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진의로3길 34-7	2023-12-06	진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세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의령군 거례면 양성리 150-2	경상남도 의령군 거례면 가례로8길 63-1	2023-12-06	가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여덟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3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가수리 858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진의로4길 97-88	2023-12-06	진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산181-7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용암로5길 97	2023-12-06	용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다섯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손오리 597-15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손오로 213-16	2023-12-06	행정구역명(손오리)을 이용하여 손오로로 명명	부여
6	경상남도 의령군 공류면 계현리 산6	경상남도 의령군 공류면 공류로8길 74-30	2023-12-06	공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여덟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내역

NO	종전 주소	변경 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변경사유	비고
1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5길 54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5길 54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5길 54-1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5길 54-2	2023-12-06	주출입구 상이 및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음	변경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법이 개정
-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및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신설
- 나.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한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규정
- 다.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환경과 자원순환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 소: (우 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2) 전 화: 055-570-2653 / FAX 570-2609

라. 제출방법: 전화, 서면, FAX,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전화 055-570-2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로, “시행규칙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를 “조례”로,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6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화장실내”를 “화장실 내”로, “할수 있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공중이 이용하도록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1호 중 “청소를 하여야 한다”를 “청소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를 “정비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를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각각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제공하여야 한다.”를 “비치·제공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상복구 하여야”를 “원상복구하여야”로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16조제1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관리내역란 다음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서식의 편의시설란 중 “에어타올(페이퍼타올)”을 “에어타월(페이퍼타월)”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편의시설란 중 “에어타올(페이퍼타올)”을 “에어타월(페이퍼타월)”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공중화장실등의설치명령에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위반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위반한때		20	40	60
나.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위반한때		10	20	30
4.보고등의요구에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공중화장실등에서의금지행위를위반한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 21조 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 21조 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 21조 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 21조 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p>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p>	<p>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 시행규칙----- ----- 규 정함----- -----.</p> <p>제3조(적용의 범위) ----- ---조례----- ----- ----- 「관광진흥법」 제52 조제 제1항·제3항 ----- -----.</p> <p>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설치기준) -----</p>

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 제
6조제3호에 따른 -----

--.

1. -----

할 것
2. -----
----- 할 것
3. ----- 화장실 내 -----
----- 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 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삭 제>

<삭 제>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군 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공중이 이용하도록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 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 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러 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

1. ----- 청소 할 것
2. -----

----- 실시할 것
3. -----
-----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 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등)

① -----

-----.

1. -----

----- 설치할 것
2. -----
--- 설치할 것
3. -----
---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생략)

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
-----.

1. -----
----- 지정할 것

2. -----
----- 할 것

3. -----

소독할 것

4. ----- 비치·제공할 것

③ -----

----- 원상복구하여야 -----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 운영하려는 -----

-----.

1. 2. (현행과 같음)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 이용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2024년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도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령군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직종	채용유형	채용인원	주요업무	근무지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주1회 이상 방문) ▶ 맞춤형 지역사회 협력자원 연계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근무조건

- 근무 시간: 시간제(주당 12시간 근무)
- 급 여: 월858,000원(2024년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준용)
- 근무기간: 2024. 1. 1. ~ 2024. 12. 31.
- 근무형태: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로서 위기(가능)청소년과 사례당 주1회 이상 청소년이 있는 현장(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으로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 및 연계 활동 수행

※ 청소년 상황에 따라 평일 저녁 또는 주말 근무를 할 수 있음

- 활동지역: 의령군 관내(의령군 서부지역 1명, 동부지역 1명)
- 특이사항: 청소년 동반자 회의 및 교육 의무 참석

3. 응시자격

- 의령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 의령군 내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거주지가 공고일부터 최종 합격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으로 되어있는 자
- 나이, 성별 제한 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 요건 : 가~다 중 하나의 요건 충족(가&나 충족자 우선채용)

가. 관련 자격증 소지(1개 이상)	나.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이1년 이상	다.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재학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4. 채용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이상 여부 등 검토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5. 시험일정

- 채용공고: 2023. 12. 1. ~ 12. 8.
- 원서접수: 2023. 12. 1. ~ 12. 8. 18:00 도착분까지
- 서류심사: 2023. 12. 11. ~ 12. 15. ※ 개별통지
- 면접일자: 2023. 12. 15.
- 합격발표: 2023. 12. 19.

6. 응시원서 교부

- 원서교부: 의령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
- 접수기간: 2023. 12. 1. ~ 12. 8. 18:00까지 (12시~13시 제외)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장소: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팀

등기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 등기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우 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충익로 63,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팀
- 등기 우편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055-570-2282) 확인 후 송부
- 응시표 회신을 위한 일반 편지봉투 동봉(등기용 우표부착, 수신인 성명·주소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사진 2매)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권한있는 자(사·군·구청장 등), 단체가 발행한 청소년 상담관련 경력증명서에 한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4대 보험 납입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각 1부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함
- 재공고의 경우 1차 응시자는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의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반환청구서 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 봉투 제출)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반환청구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청구(반환청구서, 반환용 우표, 반환 봉투를 우편으로 제출)
- 시험 시행 일시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아동청소년팀 ☎ 570-2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 가. 주 소: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나. 학 력: 최종 졸업학교를 기재합니다.
- 다. 자격증: 본인 소유 자격증 모두를 기재합니다.
- 라. 경 력: 근무 기관명을 명기합니다.
- 마.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합니다.
- 바. 생년월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 부분이 커야 함)
- 아. 기 타 :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서식2]

사 진(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이 력 서 (작성예시)				
	성	한 글	홍 길 동	생년월일	1970. 6. 29. (35세)	
	명	한 자	洪 吉 東	연 락 처	000-0000-0000	
	주 소					
학 력	기 간	학 교 명(고교 이상)		전공(학위)		
	'86.03.03~'89.02.14	00고등학교				
	'89.03.06~'95.02.16	00대 학 교		상담학(상담학 학사)		
	'95.03.07~'98.02.14	00대 학 원		상담학(상담학 석사)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급)	업 무 내 용		
	'98.03.05~'99.02.14	청소년 상담센터(00팀)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1995. 4. 1	청소년지도사 3급		한국청소년개발원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홍 길 동 (인)						

[서식3]

자기소개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2023.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 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상남도 의령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의령군 기간제근로자(청소년 동반자) 채용 조회·확인(신원조회 등)

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단순노무) 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성명:

(서명 또는 인)

II.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안내

① 이용사무(이용 목적)

- 거주지·병역 요건(해당 요건이 있을 때) 충족 여부 조회

②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2023. .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일

의 령 군 수

1. 개정이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에 따른 경제적 고충 완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신규시책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신설(안 제3조제1항제10호, 제4조제1항제2호, 별지)
- 국비 사업 확대에 따른 출산장려금 세부지원기준 수정(안 별표)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우 52140)
- 전화번호: 055-570-2924(팩스 570-2919)
- 전자우편: bliss90@korea.kr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2]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대상은 셋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부모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급”을 “지급,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3조 및 제4조 관련)

구분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원수 1명: 20만원 · 전입 후 6개월: 10만원 · 전입 후 12개월: 10만원 - 전입원수 2명: 50만원 · 전입 후 6개월: 30만원 · 전입 후 12개월: 20만원 - 전입원수 3명: 70만원 · 전입 후 6개월: 30만원 · 전입 후 12개월: 20만원 · 전입 후 18개월: 20만원 - 전입원수 4명 이상: 100만원 · 전입 후 6개월: 40만원 · 전입 후 12개월: 30만원 · 전입 후 24개월: 30만원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전입세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빈집개량지	세대 당 200만원 지원	2년 이내 관내로 2명(가족) 이상 전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세대(다른 지자체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세대는 신청 제외)	도시재생과
	전입축하선물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1회차: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차: 전입 후 1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당 1년간 지원 (주민세부과액기준)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전입세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쓰레기봉투지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다만, 전입최초 1회 한정)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전입세대	환경과

구분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공공시설이용우대	공공시설우대인증카드 (할인 또는 무료이용) 세대당 1매 제공하되 유효기간은 2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조례 제3조제1호 해당자와 같은 조 제2호 해당자 중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 - 국민체육센터시설 이용료 50%할인 - 군민문화회관 군 기획 공연 20% 할인	시설관리 사업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	1명당 100만원	조례 제3조제5호에 해당 하는 사람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기업체 근로자 전입 정착 금 지	1회에 한정하여 1명당 30만원	조례 제3조제7호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해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를 말한다.)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출산 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금 지	- 첫째아: 400만원 · 출생 후 : 200만원(바우처) · 출생 후 6개월: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원	조례 제3조제2호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전까지 부모 (미혼부와 미혼모 포함, 이하 같다)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입 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구분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아: 7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바우처) • 출생 후 6개월: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1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4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바우처) • 출생 후 6개월: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원 • 출생 후 18개월: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2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200만원 • 출생 후 48개월: 200만원 • 출생 후 60개월: 200만원 	<p>등재하여야 하며,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부모(부 또는 모)와 신생아(입양아)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p> <p>(다만, 재혼가정은 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p>	
	<p>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바우처)</p>	<p>대상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 지역상품권 카드 지원</p> <p>※ 다자녀 가정 내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는 모두 지원</p>	<p>셋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부모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p>	<p>주민생활 지원과</p>
	<p>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p>	<p>출생일 다음 달부터 취학 전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 달부터 1명당 월 3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p>	<p>군내 거주 셋째 이상인 영·유아</p> <p>(부모가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p>	<p>주민생활 지원과</p>

구분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지원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지원, 연 1회(최장 5년간)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 부(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로 금융기관에 주거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다만,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하여야 하고, 1가구 다주 택 소유자는 제외)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초음파 검진비 6만원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군내 거주 외국인여성결혼이민 임산부 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임산부로 보건소 등록 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된 자	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최대 100만원)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보건소
	출산 축하선물 지급	10만원 이내 출산 축하선물	의령군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의령군인 외국인 임산부 또는 주민등록이 의령군인 임산부	보건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의령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항목(필수)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인구증가 시책 지원 결정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일

의 령 군 수

1. 개정이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에 따른 경제적 고충 완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신규시책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신설(안 제3조제1항제10호, 제4조제1항제2호, 별지)
- 국비 사업 확대에 따른 출산장려금 세부지원기준 수정(안 별표)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우 52140)
- 전화번호: 055-570-2924(팩스 570-2919)
- 전자우편: bliss90@korea.kr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2]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대상은 셋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부모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급”을 “지급,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3조 및 제4조 관련)

구분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원수 1명: 20만원 · 전입 후 6개월: 10만원 · 전입 후 12개월: 10만원 - 전입원수 2명: 50만원 · 전입 후 6개월: 30만원 · 전입 후 12개월: 20만원 - 전입원수 3명: 70만원 · 전입 후 6개월: 30만원 · 전입 후 12개월: 20만원 · 전입 후 18개월: 20만원 - 전입원수 4명 이상: 100만원 · 전입 후 6개월: 40만원 · 전입 후 12개월: 30만원 · 전입 후 24개월: 30만원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전입세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빈집개량	세대 당 200만원 지원	2년 이내 관내로 2명(가족) 이상 전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세대(다른 지자체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세대는 신청 제외)	도시재생과
	전입축하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1회차: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차: 전입 후 1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전입세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쓰레기봉투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다만, 전입최초 1회 한정)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전입세대	환경과

구분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공공시설이용우대	공공시설우대인증카드 (할인 또는 무료이용) 세대당 1매 제공하되 유효기간은 2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조례 제3조제1호 해당자와 같은 조 제2호 해당자 중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 - 국민체육센터시설 이용료 50%할인 - 군민문화회관 군 기획 공연 20% 할인	시설관리 사업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	1명당 100만원	조례 제3조제5호에 해당 하는 사람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기업체 근로자 전입 정착 금 지	1회에 한정하여 1명당 30만원	조례 제3조제7호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해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를 말한다.)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출산 장려 시책 지원	출산장려 금 지	- 첫째아: 400만원 · 출생 후 : 200만원(바우처) · 출생 후 6개월: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원	조례 제3조제2호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전까지 부모 (미혼부와 미혼모 포함, 이하 같다)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입 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구분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아: 7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바우처) • 출생 후 6개월: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1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4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바우처) • 출생 후 6개월: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원 • 출생 후 18개월: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2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200만원 • 출생 후 48개월: 200만원 • 출생 후 60개월: 200만원 	<p>등재하여야 하며,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부모(부 또는 모)와 신생아(입양아)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p> <p>(다만, 재혼가정은 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p>	
	<p>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지원 (바우처)</p>	<p>대상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 지역상품권 카드 지원</p> <p>※ 다자녀 가정 내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는 모두 지원</p>	<p>셋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부모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p>	<p>주민생활 지원과</p>
	<p>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p>	<p>출생일 다음 달부터 취학 전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 달부터 1명당 월 3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p>	<p>군내 거주 셋째 이상인 영·유아</p> <p>(부모가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p>	<p>주민생활 지원과</p>

구분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지원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지원, 연 1회(최장 5년간)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 부(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로 금융기관에 주거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다만,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하여야 하고, 1가구 다주 택 소유자는 제외)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초음파 검진비 6만원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군내 거주 외국인여성결혼이민 임산부 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임산부로 보건소 등록 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된 자	보건소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최대 100만원)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보건소
	출산 축하선물 지급	10만원 이내 출산 축하선물	의령군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의령군인 외국인 임산부 또는 주민등록이 의령군인 임산부	보건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의령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필수)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인구증가 시책 지원 결정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일

의 령 군 수

1. 개정이유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지원 내용 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 국비 사업 확대에 따른 출산장려금 세부지원기준 수정(안 제2조제5항)

3. 개정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우 52140)
- 전화번호: 055-570-2924(팩스 570-2919)
- 전자우편: bliss90@korea.kr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1]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본문 중 “6,000,000원”을 “7,000,000원”으로, “13,000,000원”을
“14,0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내용) ① ~ ④ (생 략) ⑤ 출생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첫째 아이 4,000,000원, 둘째 아이 <u>6,000,000원</u> , 셋째 아이 이상의 경 우 <u>13,000,000원</u> 이내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 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 다. ⑥ (생 략)	제2조(지원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7,000,000원</u> ----- -- <u>14,000,000원</u> ----- ----- ----- ⑥ (현행과 같음)